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7. . (제 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7.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20. 5. 26)됨에 따라 산림사업 도급계약의 원칙을 신설하고 공사내용, 도급금액, 사회보험료 부담 금액과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산림사업 도급계약의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산림사업 도급계약의 내용 신설(안 제25조의3)

- 산림사업 관련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을 위해 공사내용, 도급금액, 사회보험료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산림사업 계약에 명시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 3(산림사업 도급계약의 내용)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내용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 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5. 도급계약 당사자 어느 한쪽에서 설계변경, 공사중지 또는 도급계약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또는 공사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와 그 절차
10.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
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12. 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 시기
13. 공사가 완성된 후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4. 계약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 손해 배상에 관한 사항
15. 하자보수책임기간 및 하자담보방법
16. 해당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계약당사자 양쪽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부 칙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5조의 3(산림사업 도급계약</u> <u>의 내용) 법 제24조의2제2항</u> <u>에 따라 산림사업계약에 명</u> <u>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u> <u>호와 같다.</u> <u>1. 공사 내용</u> <u>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 중</u> <u>노임에 해당하는 금액</u> <u>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u> <u>성의 시기</u> <u>4. 도급금액의 선금이나 기성</u> <u>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u> <u>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u> <u>및 금액</u> <u>5. 도급계약 당사자 어느 한</u> <u>쪽에서 설계변경, 공사중지</u> <u>또는 도급계약 해제 요청을</u> <u>하는 경우 손해부담에 관한</u> <u>사항</u> <u>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u> <u>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u> <u>위에 관한 사항</u> <u>7.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u>

다른 도급금액 또는 공사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
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하도급계
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
유와 그 절차

10.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지급에 관한 사항

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
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 등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법
령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12. 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
한 검사 및 인도 시기

13. 공사가 완성된 후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4. 계약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5. 하자보수책임기간 및 하자담보방법

16. 해당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계약당사자 양쪽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림자원과	
연 락 처	(042) 481 - 4181